

제26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 8. 24.)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노 민 섭]

목 차

I . 검토경과	1
II . 제출근거	1
III .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출·세입처리상황	2
5. 일반 회계 세입결산	3
6. 일반회계 세출결산	3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5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6
9. 계속비 결산	8
10. 예비비 지출	9
11. 다음연도 이월사업	1
IV . 기금결산	12
V . 채권액결산	13
VI . 채무액결산	14
VII . 보조금결산	14
VIII . 기타의견	15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 2022. 8. 12.
- 제 출 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22. 8. 16.
- 의안번호 :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71호)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72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 · 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2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이월액)
합 계	880,574	889,102	720,973	168,129
일반회계	802,524	805,817	658,172	147,645
특별회계	78,050	83,285	62,801	20,484

2. 세입결산(결산서 p32)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C/A	C/B
계	789,070	802,767	797,976	1,058	3,733	101.1	99.4
일반회계	802,524	809,035	805,817	94	3,122	100.4	99.6
특별회계	78,050	83,978	83,285	0	692	106.7	99.2

3. 세출결산(결산서 p3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증 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보조금 반납액 (F)	집행잔액 $G=C-D-E-F$
계	783,539	97,032	880,571	720,973	113,588	6,536	39,474
일반회계	709,516	93,007	802,523	658,172	103,247	6,491	34,613
특별회계	74,023	4,025	78,048	62,801	10,341	45	4,861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8)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889,103	720,974	198,127	45,423	45,227	22,356	6,536	48,115
일반회계	805,817	658,172	147,644	37,647	44,202	20,816	6,491	38,019
특별회계	83,286	62,802	50,483	7,776	1,025	1,540	45	10,096

5. 일반 회계 세입결산(결산서 p44)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802,251	809,031	805,814	93	3,121
지 방 세 수 입	33,143	36,237	34,770	52	1,414
세 외 수 입	16,006	21,776	20,026	41	1,707
경세외수입	6,814	7,942	7,908		33
임세외수입	8,883	12,963	11,674	39	1,24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09	871	444	2	425
지 방 교 부 세	277,538	277,675	277,675		
조 정 교 부 금 등	29,944	29,944	29,944		
보 조 금	230,981	228,837	228,837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214,639	214,562	214,562		

6. 일반회계 세출결산(결산서 p89)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802,462	658,154	103,235	6,420	34,652
의회운영위원회	935	772	0	0	162
총 무 위 원 회	372,931	329,911	23,279	3,277	16,438
산업건설위원회	428,596	327,471	79,956	3,143	18,052

○ 부서별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의 회 사 무 과		935	772	0	0	162
총 무 위원회	소 계	372,931	329,911	23,279	3,277	16,438
	기획예산담당관	43,943	39,102	687	—	4,153
	행 정 과	68,524	62,886	81	20	5,535
	미 래 전 략 과	19,316	19,166	—	10	139
	인 구 교 육 과	10,311	9,165	363	88	694
	민 원 소 통 과	1,781	1,583	5	7	184
	재 무 과	5,392	4,904	39	7	441
	문 화 관 광 과	21,710	16,466	4,373	171	698
	복 지 정 책 과	42,438	38,483	1,991	1,300	662
	행 복 나 눔 과	109,790	102,385	4,690	1,439	1,275
	보 건 소	10,165	9,116	354	220	471
	보 건 정 책 과	7,219	6,322	354	185	355
	건 강 증 진 과	2,946	2,794	—	35	116
	체육시설사업소	24,314	12,040	10,658	15	1,600
	읍 면	15,247	14,615	38	—	586

7.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세 입(결산서 p21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과 목 \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A)	수 납 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	78,047	83,974	82,365	144	691
공 기 업	48,364	51,528	51,317	0	210
의 료 급 여 기 금	989	976	976	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30	0	0
주 차 장 관 리	580	1,054	573	144	481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824	5,803	5,803	0	0
수 질 개 선	5,849	5,849	5,849	0	0
댐주변지역지원사업	915	917	0	0	0
농 업 발 전 기 금	15,496	17,817	17,817	0	0

○ 세 출(결산서 p215,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B)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D=A-B-C)
계	78,046	62,798	10,339	44	4,909
공 기 업	48,364	35,723	9,109	0	3,532
의 료 보 호 기 금	989	972	0	16	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30	30	0	0	0
주 차 장 관 리	580	285	0	0	295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5,824	4,504	1,043	1	277
수 질 개 선	5,848	5,698	101	27	49
댐주변지역지원사업	915	828	86		1
농 업 발 전	15,496	14,758	0		738

8.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291)

☐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결산서 p294)

☐ 전 용(일반회계) - 결산서 p295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7건	2,543	244	244	

☐ 이 체(일반회계) - 결산서 p297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체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942건	120,931	120,931	

검 토 의 견

☐ 전 용(일반회계)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따라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산의 전용을 실시하는 것은 당초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그쳐야 하며,
-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추경을 통하여 증·감 조정후 집행할 것을 결산 검사에서도 권고되었음.
- 17건의 전용 사업 대부분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위해서 적절하게 전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차후 전 부서에서는 예산의 전용시 상기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 이 체(일반회계)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사업 업무 이관, 조직 신설 등으로 업무 이관 추진된 사항으로 예산을 이체 승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9. 계속비 결산(3권-결산서 부속서류 p121)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34,056	12,202	20,854	451
노인요양시설 확충(신축)사업	4,694	1,697	2,996	0
문화관광자원개발-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전환사업)	7,127	1,412	5,174	
지자체자연휴양림-거창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1,823	1,823		
거창자생식물원 조성사업(전환)	193	173		19
빠재익스티림레저모험타운 조성사업(전환)	2,067	1,020	1,046	
백두대간거점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0	34	165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용수개발)(전환)	646	187	403	55
웅곡천생태하천복원사업(전환)	2,399	23	2,000	376
신활력플러스사업	3,296	268	3,027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9,602	4,100	5,501	
취약지역개조(궁항지구)	113	111		1
기초생활거점육성(북상면)	1,896	1,354	542	

검 토 의 건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12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타당함.

10. 예비비 지출(결산서 p371)

(단위 : 백만원)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합	계	21건	11,097	9,801	160	1,131
행 정 과	백 신 접 종 지 원 사 업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	128	11		117
행 정 과	백 신 접 종 지 원 사 업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지원	7	4		3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활동 활 성 화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	29	20		9
문화관광과	관 광 활 성 화	관광사업체 재난지원 금 지원사업	29	14		15
문화관광과	관 광 활 성 화	경남 행사, 축제, 공연 관련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6	6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31	27		4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12	12		0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15	4		10
복지정책과	주민 생활지원	거창형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관련)	6,150	5,987		162
복지정책과	재 해 구 호	재해구호	56	55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 업(제4차 정부형 재 난 지 원 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 차 정부형재난지원금)	29	19		10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 업(제4차 정부형 재 난 지 원 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 차 정부형재난지원금)	10	4		5
복지정책과	한시생계지원사 업(제4차 정부형 재 난 지 원 금)	한시생계지원사업(제4 차 정부형재난지원금)	5	1		4
경제교통과	지역경제 활성화	소 상 공 인 긴 급 재 난 지 원 금	4,025	3,271		753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단 위	세부사업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 사업	26	25		1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 자 거창형 재난지원금	76	73		3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전세버스기사 긴급고용 안정 지원 사업	26	25		1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	7	6		1
경제교통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업	15	15		
농업축산과	가축방역	살처분	414	221	160	33
보건정책과	공공의약품관리	체험방형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원	1	1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행정과의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지원 사업 등 21건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11.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부속서류 p166)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281	377,216	103,246	
명 시 이 월	96	157,670	37,647	
사 고 이 월	167	189,293	44,202	
계 속 비 이 월	18	30,253	21,397	

※ 지난해 이월사업 : 309건, 96,949백만원

검 토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지연, 설계변경, 사업대상지 선정지연, 기본계획 미확정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의 경우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계속비 지원사업, 특별교부금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의 이행, 보상절차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당해 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기금결산(결산서 p393)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8종)	167,944	△18,157	44,633	62,790	149,787
식 품 진 흥 기 금	144	△9	59	68	135
중소기업육성기금	6,455	△279	90	369	6,176
사 회 복 지 기 금	3,603	△1,060	69	1129	2,543
재 난 관 리 기 금	3,522	△148	1,020	1,168	3,374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8	△4	4	8	504
옥외광고발전기금	340	28	71	43	368
체 육 진 흥 기 금	1,094	9	14	5	1,10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2,278	△16,694	43,306	60,000	135,584

검 토 의 견

- 기금은 복잡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가능함.
- 세입재원 중 보통교부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편성하여 세입이 부족한 때에 이를 충당하여 사용함으로써 연도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및 군 재정의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검토됨.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V 채권액결산(결산서 P546)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5,884	1,072	2,650	4,306
일반회계	3,573	86	570	3,089
특별회계	2,301	976	2,070	1,207
농업발전기금	2,301	976	2,070	1,207
기 금	10	10	10	10
사회복지기금	10	10	10	10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건

- 전년도 말 잔액은 5,884백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072백만원이 발생하고, 2,650백만원 소멸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4,306백만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10백만원, 보증금채권 143백만원, 융자금 채권 2,907백만원으로 보증금채권은 콘도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주택융자금임.

VI 채무액결산(결산서 p377)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VII 보조금결산(본예산)(결산서 부속서류 p329)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63,409 (126,361)	361,453 (126,849)	301,591 (99,838)	47,781 (21,117)	12,428 (5,898)
일 반 회 계		356,546 (125,271)	354,590 (125,759)	295,129 (99,003)	47,680 (21,117)	12,131 (5,644)
특별 회계	발전소	30	30	30	(0)	(0)
	주변지역지원사업	(0)	(0)	(0)	(0)	(0)
	의료급여기금	227 (0)	227 (0)	211 (0)	(0)	16 (0)
	산업단지조성사업	1,142 (1,088)	1,142 (1,088)	887 (835)	(0)	253 (252)
	수질개선	5,464 (2)	5,464 (2)	5,334 (0)	101 (0)	28 (2)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검 토 의 견

- 2021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61,453백만원으로, 예산액 363,409백만원이고, 집행액은 301,591백만원으로 47,781백만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126,849백만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34.8%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사후적인 관계로 집행된 예산의 내용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효과는 없다.
- 결산은 1회계연도 동안 운영된 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사가 완료되어야 그 운영이 종결되므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행정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결산심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 집행 및 편성을 위한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음.
- 재정 운용 기본방향은 재정 운용의 선택과 집종을 통한 재정 성과 창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최대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 환경 조성으로,

-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신규사업은 재원대책 마련 후 추진하고, 전략적 예산확보와 효율적 재원투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군정발전 전략추진, 지역경제 살리는 효율적인 재정회계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음.
- 2021년도 총 세입액은 889,102백만원, 총 세출액은 720,973백만원으로 잉여금은 168,129백만원임. 세입대비 18.9%가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재정 계획과 재원 배분에 다소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 것임.
- 총 세입은 889,10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91,12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77,538백만원(31.2%)이고, 보조금 230,981백만원(26.0%), 조정교부금 29,944백만원(3.4%), 지방세는 33,142백만원(3.7%), 세외수입은 16,006백만원(1.8%)으로 우리군 재정은 자체재원(5.5%)보다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60.4%)의 비율이 높은 편임.
- 세출은 720,97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1,34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135,945백만원, 농림해양수산 130,616백만원, 일반공공행정 85,378백만원천원의 순이며,
- 전년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감소 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정이며, 재정안정화 적립금 135,584백만원이 적립되어있음

-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의 사업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재검토를 해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나머지 예산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특정 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례 등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말 현재 기금 조성액으로 149,787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4,635백만원임
- 사용액은 62,792백만원으로 18,15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최근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임
-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운용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 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021 일반회계 사업에 예산불용액이 과다발생분은 사업별 집행계획을 자세히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 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하고, 보조사업비 반환금도 지난해에 이어 증가 추세여서 집행에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임.

- 기타 특별회계 중 일부 회계의 예산이 목적 없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매년 반복해서 이월,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방안 강구가 요구됨.
- 불납결손액 다소 줄었다고 하나 코로나19 등 징수 여건 악화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결손처분 절차와 엄격한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증식하여야 함에도 유동성 규모 및 자금의 지급 시기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중도 해지함으로써 이자 손실 과다발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지난해에 이어 481백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서 징수 방법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